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99

발의연월일: 2020. 7. 27.

발 의 자:백혜련·기동민·김민철

김민석 · 김남국 · 신정훈

홍성국 · 김회재 · 박성준

남인순 · 최기상 · 박영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94조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 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음.

이에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 단서 신설). 법률 제 호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양벌규정) 법인 또는 단체	제32조(양벌규정)
의 대표자, 법인·단체 또는 개	
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	
종업원이 그 법인・단체 또는	
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	
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	
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• 단체	
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	
금형을 과(科)한다. <단서 신	<u>다만, 법인·</u>
<u>설></u>	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
	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
	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
	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	그러하지 아니하다.